

■ 법률 칼럼

# 학생 신분 이탈 시 언제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되나요?

지난 8월 9일 이민국은 연수비자(J-1), 직업훈련학생비자(M), 학생비자(F-1) 체류자들의 불법체류 기간 산정을 위한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음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허가서(I-94)에 적힌 날짜를 어기는 경우 불법 체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I-94의 체류 기간은 유효하지만 허가 없이 취업을 하거나(unauthorized employment) 학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 신분이고 다른 이민/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adjustment of status/change of status)등 신청이 거부되었고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다면 그 거부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됩니다.

이민국은 지난 8월9일부터 F-1, M-1, J-1 유학생과 연수생들 중에서 체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사실상 즉각 불법 체류일로 산정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F-1, M-1, J-1 유학생, 직업학교학생, 연수생들은 I-94 출입국 카드에 체류 만료 날짜 대신 Duration of Status(D/S)라는 표시가 되어 만료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받거나 이민판사가 체류 신분 위반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신분은 없어졌지만 재입국 금지 규정 불법 체류 일자에 산정 되지는 않았습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체류허가증인 I-94에 Duration of Status(D/S)를 받으면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라도 재입국 금지 기간에 누적되지 않아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나 취업비자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F-1, M-1, J-1 유학생, 직업학교 학생, 연수생들도 체류 신분을 위반하게 될 경우 사실

상 즉각 불법 체류일로 산정 받아 180일을 넘길 경우 미국 방문이나 영주권 진행에 장기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유학생이 학교수업을 끝마쳤거나 더 이상 듣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교환연수생들이 승인 받은 업무를 종료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불법 체류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미국의 이민법으로 불법 체류한지 180일을 넘길 경우 3년 동안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고 미국에도 다시 입국하지 못하며 영주권도 기각되는 등 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일이 1년을 넘기면 무려 10년간이나 미국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완전 봉쇄하고 있습니다.

입국 거절을 당하는 경우 사면(Waiver)을 신청해서 허가 받을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일단 재입국금지법에 적용이 되면 영주권을 받거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나 비자를 받는 게 어려워 집니다.

그래도 미국 내 체류신분이 F-1, M-1, J-1 유학생과 연수생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서 입국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는 8월9일부터 새로운 방침대로 시행되면 불법 신분으로 180일이 넘는다면 재입국금지법에 적용됩니다.

위의 사실에 유념하셔서,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학교 출석을 잘 관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 변경 시에 꼭 학교에 등록을 유지하셔서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포함)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바로 불체가 되시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6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 상악동 증대술

코 양쪽 옆 눈 아래 부분의 뼈 속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합니다. 이 상악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정확한 기능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상악동은 분비세포로 구성된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막에서 분비된 분비물은 코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이 분비물의 배출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즉 분비물이 배출되지 않고 상악동 내에 고여 있다가 감염되어 생기는 병이 상악동염, 즉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이 상악동은 상악, 즉 위턱의 어금니 부위 바로 위에 위치 합니다. 어금니가 빠질 경우 잔존뼈의 양이 이 상악동으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충분한 양의 잔존골이 어금니 상실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개 최소 10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양의 뼈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뼈 이식 수술을 상악동 증대술이라고 합니다.

상악동 증대술이 치과영역에서 소개된지 벌써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상악동 증대술이 시술되었고 임플란트 치료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상악동 증대술은 크게 두가지 시술이 있습니다. 과거 이민인후과에



서 주로 시술되던 축농증 수술법을 기초로 고안된 수술법이 1975년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이 수술법은 상악 어금니 부분의 잇몸을 위쪽으로 들어 올린 후 광대 아래 상악동의 전면부위의 뼈에 구멍을 내어 상악동막을 들어 올린 후 그 막 아래 뼈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잔존 뼈의 양에 관계없이 충분한 양의 뼈의 증대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잇몸 절개량과 거상량이 크기 때문에 수술 후 많이 붓고 심지어 멍도 들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1243호에서 계속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www.isemusa.com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